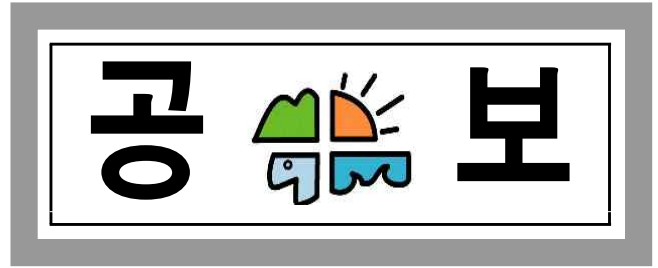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699호 2012년 5월 9일(수)

공 고

- 「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」 입법예고..... 2
- 「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..... 5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「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」 입법예고

「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5월 9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축제 전문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우리시 대표축재인 설악문화제와 그 밖의 축제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축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)

나. 설악문화제 및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위탁(안제3조)

다.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(안 제4조)

라.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·대부할 수 있다(안 제5조).

마. 위원회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, 예산서, 결산서를 제출한다(안제6조).

바. 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(안 제7조)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(전화: 033-639-2049, FAX: 033-639-2345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(전화:033-639-2049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의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 및 그 밖의 축제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설립·운영)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의 위탁) 속초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축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① 설악문화제
- ② 그 밖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

제4조(경비지원) 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축제준비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 시장은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계획서 제출)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행정지도)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정관 또는 「민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

「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5월 9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의하여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“속초문화원”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
○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용도(안 제6조부터 제8조)

- 법 제15조에 의하여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나누어 보조
-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운영보조금은 문화원 상근직원에게 대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로 함을 규정
- 우리 시 소유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법 제15조에 규정된 무상 대여 근거를 명시함

○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(안 제9조)

-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

산서 등 재산목록과 사원현황 제출 명시함.

○ 사무의 검사·감독 및 보조금 등의 정산(안 제10조 및 제11조)

-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,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문화원장은 보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예산의 반영(안 제12조)

-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다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 ·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(전화: 033-639-2958, FAX: 033-639-2345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(전화:033-639-2958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“지방문화원진흥법”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속초문화원의 육성·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문화원”이란 속초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.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속초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.)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속초문화원장의 책무) 속초문화원장(이하 “문화원장”이라 한다)은 속초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

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된다.

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

제8조(운영보조금의 용도)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
2.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
3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제9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 ① 문화원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·지출 결산서
3.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현황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,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조금 등의 정산)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2조(예산의 계상)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」 및 「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